

2024년 제7회 화성외국인보호소

[조리원] 채용 공고

화성외국인보호소 2024년도 제7회 기간제근로자 등(조리원) 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4년 4월 19일

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장

1. 채용예정 직종 및 인원

채용구분	채용직종	채용인원	담당업무	근로계약기간
기간제근로자	조 리	1명 (남·여 무관)	-조리 및 조리과 관련된 제반업무	채용일로부터 1년 *재계약 및 무기계약 전환가능
휴직대체 근로자	조 리	1명 (남·여 무관)	-조리 및 조리과 관련된 제반업무	채용일 ~ 2024. 8. 11. *무기계약 전환불가

2. 근로 조건

가. 신분 및 모집분야 : 공무원이 아닌 기간제근로자(조리원)

나. 모집인원 : 기간제근로자 1명, 휴직 대체근로자 1명

다.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1년

※ 법무부 공무원 등 근로자 관리지침에 의거 근무성적평정 등에 따라 재계약 및 무기 계약(공무직) 전환 가능

라. 휴직 대체근로자 : 채용일로부터 2024.08.11.

※ 단기근로자와 휴직 대체근로자는 기관사정에 따라 계약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 무기계약(공무직) 전환 불가.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 계약종료

마. 근무형태

○ 조리원 : 06:00 ~ 18:30(격일근무로 근무일 다음날 휴무, 휴게시간 1시간 30분)

- 화성외국인보호소 업무 사정에 따라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바. 보수 수준

○ 조리원 : 월 고정급 2,304,800원(세 전)

- 명절휴가비 연 1,100,000원 ※명절(연휴)일에 재직 시 해당함

- 맞춤형 복지비 연 500,000원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해당함

○ 공통사항

-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3. 응시대상 및 자격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별표 1>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합격기준에 적합한 신체 건강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 제외)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 학력 및 경력 : 제한사항 없음

○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에 의한 적격판정을 받은 자

○ 화성외국인보호소 출·퇴근이 가능한 자

※ 기관 소재지: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39(슬항리215-7)

①<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

1. 피 성년 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4. 우대사항(서류전형만 적용)

-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관련자격증 소지자(기능사 이상) 우대
- 관련분야(조리) 근무 경력자(최소 경력 1년 이상)

※ 단, 의무 복무기간 경력은 제외

5. 가점 사항

구분		부가 점수
사회 형평 가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법정가점은 동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6.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1차)

채용분야	서류전형(선발 배수)				
기간제근로자 휴직대체 근로자 (조리원)	○ 적극적 서류전형(6배수 이상 지원 시)				
	계	평가점수			사회형평 가점
		지원분야 적합성	우대사항 (자격증)	지원분야 경력	
	100점 + 가점	60	20	20	3
	- 가산점수를 제외한 평가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서류 전형 평가점수에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합격자 배수 초과 가능)				
○ 소극적 서류전형(5배수 이하 지원 시 자격요건 적격자 전원 통과)					
※ 단,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자(① 기재 내용이 없거나 특정 문자만 기재하는 등 의미 없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 ② 자기소개서 항목당 허용 글자 수의 30% 미만으로 기재한 경우, ③ 기타 ① ~ ②의 사유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의 경우는 탈락처리					

나. 면접시험(2차)

채용분야	내용
기간제근로자 휴직대체 근로자 (조리원)	○ 평정요소 : 1. 근로자로서 정신자세(10점)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10점)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10점) 4. 예의 품행 및 성실성(10점)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10점) 6. 사회형평 가점(3점) ○ 동점자 발생 시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 > 서류전형 성적 순 * 상기 기준으로도 합격자 결정이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결정

7. 시험시행 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비 고
채용공고	2024. 4. 19.(금) ~ 2024. 4. 25.(목)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응시원서 접수	2024. 4. 19.(금) ~ 2024. 4. 25.(목)	· 화성외국인보호소 2층 관리과 · 등기 및 방문접수 (택배접수 불가)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만 인정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024. 4. 26.(금) 16:00 이후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 합격자 개별통보	
면접시험	2024. 4. 29.(월)	· 화성외국인보호소 2층 소회의실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2024. 4. 30.(화) 16:00 이후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 합격자 개별통보	
합격자 등록	2024. 5. 1.(수)	· 화성외국인보호소 2층 관리과	

*우편 접수처 및 방문접수 :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39(슬항리215-7)

화성외국인보호소 관리과 (우편번호 : 18538)

※ **결봉투에 “조리원 응시원서(채용분야)” 표기. (예) 조리원 응시원서 (기간제근로자, 휴직대체근로자)**

※ 우리 소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일정은 개별 통보합니다.

※ 접수 여부 미확인, 응시원서 오기재,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가 지게 됩니다.

※ 면접 세부 일정은 추후 개별 통보 예정

8. 응시자 제출서류

제출시기	제출서류
원서접수 시	○ (필수) 응시원서 1부 ○ (필수) 이력서 1부 ○ (필수) 자기소개서 1부 ○ (필수)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 (필수)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1부 ○ (필수)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 (필수)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선택) 경력증명서, 우대사항 관련 자격증 사본, 가점대상 서류 등 - 원서접수 시 제출 불가능할 경우 면접 당일 제출 가능

제출시기	제출서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 ~ 면접전형 당일	구분	제출대상	제출서류
	기간제 (조리원)	합격자 전원(공통)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사본 1부
		가점 대상자	○사회형평 가점 대상자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1부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 다문화가족 : 다음의 증빙서류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 부모 또는 배우자(귀화 허가를 받은 자) 명의의 기본증명서(혼인한 외국인의 전국적 표시) ·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결혼이민자) ○자격가점 대상자 : 관련 자격증 사본 제출
		우대사항 대상자	○우대사항 관련 자격증 사본 제출 ○경력증명서 ※ 경력 사실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하며 발급기관(회사)명(직인)과 확인 가능한 연락가 명시된 유효기간 내의 증명서만 인정
최종합격자 발표 후	○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공정채용확인서 1부 ○ 신원진술서(신원조사용) 1부 ○ 채용신체검사서 1부 ○ 탈모 상반신 사진 : 반명함판 2매(최근 3개월 이내 촬영)		

※ 응시자 제출서류는 증빙서류 검증 과정에서 필요 시 일부 추가 요구 등 변동 가능

※ 심사에 불필요한 증빙서류(자격·우대사항 증빙서류 등)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

※ 법정가점은 동일 채용형태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9. 유의사항

가. 채용서류 반환 관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에 별지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채용절차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청구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청구기한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 단, 인사감사 등 채용 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에 관한 정보는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보관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입니다.
2. 우리 기관 채용에 응시한 자 중 최종 합격하지 못한 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기관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4.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채용기관에 팩스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하시면 되고,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접수여부를 채용기관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반드시 확인)
5. 채용서류는 반환 청구에 대비,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까지 보관하며, 그 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할 예정입니다.

나. 채용비리 관련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공정채용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법무부 비공무원 공정채용 제26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를 실시합니다.

다. 기타 유의사항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 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입사지원서 기재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전형 응시 불가)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기재여부 확인을 위해서 활용되며,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심사위원회에 일절 제공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에 기재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 생년월일 등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심사위원회에 제공됩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조치, 신체검사 결과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됩니다.
- 입사지원서는 접수 마감기한('24.04.25.(목) 18시)까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매 채용 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 지참 바랍니다.(미지참 시 응시 불가)
*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포함, 유효기간 내)
- 본 채용 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입니다.
- 기타 관련 문의 사항은 채용담당자(031-8055-7019)에게 문의 바랍니다.

10. 참고사항

- 피채용인은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을 적용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채용 포기, 결격사유, 사전 예고 없는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인원 수와 무관하게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 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공무원임용 및 채용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
- 면접시험 응시자는 응시표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20분 전까지 화성외국인보호소 면접대기장소에 도착·대기 바랍니다.

붙임 1. 서류전형 제출서류 총괄표

- 2. 응시원서
- 3. 이력서
- 4. 자기소개서
- 5.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 6.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 7.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 8. 자격 검증을 위한 동의서
- 9. 경력(재직)증명서
- 10.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아래 붙임서류의 모든 서명란은 반드시 자필로 서명합니다.)

【붙임 1】

서류전형 제출서류 총괄표

성명	생년월일	응시기관	응시분야
		화성외국인보호소	기간제근로자/휴직대체근로자 (조리원)

■ 제출 목록

목 록	제출여부
① (필수) 제출서류 총괄표 1부, 【붙임 1】	☐ 제출 ☐ 미제출
② (필수) 응시원서 1부, 【붙임 2】	☐ 제출 ☐ 미제출
③ (필수) 이력서 1부, 【붙임 3】	☐ 제출 ☐ 미제출
④ (필수) 자기소개서 1부, 【붙임 4】	☐ 제출 ☐ 미제출
⑤ (필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붙임 5】	☐ 제출 ☐ 미제출
⑥ (필수)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1부, 【붙임 6】	☐ 제출 ☐ 미제출
⑦ (필수) 비위 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붙임 7】	☐ 제출 ☐ 미제출
⑧ (필수)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붙임 8】	☐ 제출 ☐ 미제출
⑨ (선택) 관련분야 경력(재직)증명서 ※ 근무기관의 재직·경력증명서에 별도 서식이 없는 경우 【붙임 9】 작성 제출	☐ 제출 ☐ 미제출
⑩ (선택) 조리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제출 ☐ 미제출
⑪ (선택) 사회적형평 가점 서류 사본 1부	☐ 제출 ☐ 미제출

※ □에는 서류 제출 여부를 √하여 맨 앞장에 철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경력 및 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2024. . .

작성자 : (서명)

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장 귀하

응 시 원 서

본인은 화성외국인보호소 2024년도 제7회 기간제근로자(조리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화성외국인보호소 주관 채용시험에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4 년 월 일
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장 귀하

※응시번호	2024-07-	성명	(한글)
응시분야	조리원(기간제근로자, 휴직대체근로자 中 택1)		(한자)
생년월일	년 월 일		
주 소	(-)		
연락처	(휴대) 전화번호 - -		
○ 상기 본인은 화성외국인보호소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과 관련하여 채용관리 등을 위한 상기의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합니다. * 이용·보유기간 : 제공일로부터 5년(보유기간 경과 시 폐기) * 거부 시 불이익 조치 : 개인정보이용제공 부동의 시 본 채용에 대한 응시 불가 제공인 (서명 또는 인)			

.....

※응시번호	2024-05-	응 시 표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응시분야	조리원(기간제근로자, 휴직대체근로자 中 택1)	성명	
2024년 월 일 화성외국인보호소장			

주 의 사 항

-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2. 면접시험 당일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 시작 20분 전까지 소내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필체로 작성한다.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의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된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작성요령》

- ① 「※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
- ② 응시분야 : [기간제근로자, 휴직대체근로자 중 택1]
- ③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 ④ 성명 · 생년월일 · 전자우편 · (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자기소개서

성명 :

2024. . .

작성자 (서명)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작성(감점사항)
- 분량은 A4용지 2매이내로 하고, 자필 또는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100자 이상 작성
- 서명란은 반드시 자필서명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화성외국인보호소는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기본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국적,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은행, 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 학위, 수상실적, 경력·재직사항, 가족사항, 차량번호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청사출입관리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필수] 민감정보 수집 · 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북한이탈주민정보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화성외국인보호소장 귀하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화성외국인보호소 기간제근로자 시험에 응시함에 **가이드라인 제23조**(채용결격 사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024년 월 일

성명: (서명)

화성외국인보호소장 귀하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u>공직자</u>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해당 ☐ 비해당 ☐
2. ‘ <u>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u>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해당	해당 ☐ 비해당 ☐
3-1. 해당 부패행위로 <u>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u> 된 사실이 있는지	해당 ☐ 비해당 ☐
3-2.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u>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u>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해당 ☐ 비해당 ☐
4-1. 해당 부패행위로 <u>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u>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해당 ☐ 비해당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u>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u>	해당 ☐ 비해당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해당 ☐ 비해당 ☐
1, 2, 3-1, 3-2 (모두 충족) ⇒ <u>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u>	해당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u>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u>	해당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2024년 월 일

생년월일

지 원 자

(서명)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성명		응시분야	기간제근로자/ 휴직대체 근로자 (조리원)
생년월일	. . .		

본인은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시행하는 2024년도 제7회 기간제근로자(조리원)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화성외국인보호소가 실시하는 자격, 학위,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4년 월 일

성명: (서명)

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장 귀하

경력(재직) 증명서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주소																
경력 사항	근무기간		소속 (근무처)	직위 (직급)	담당업무 ①	주당근무시간	비고 ②										
	부터	까지															
상별 사항	포 상			징 계													
	연월일	종 류	시행청	연월일	종 류	시행청											
위 와 같 이 증 명 합 니 다. 2024년 월 일 증명기관명 : 주 소 : 전화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table><tr><th colspan="2">발급자</th></tr><tr><td>소 속</td><td></td></tr><tr><td>직 급</td><td></td></tr><tr><td>연 락 처</td><td></td></tr><tr><td>성 명</td><td>(인)</td></tr></table>								발급자		소 속		직 급		연 락 처		성 명	(인)
발급자																	
소 속																	
직 급																	
연 락 처																	
성 명	(인)																
① 담당업무 : 수행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 ② 비 고 : 기타 참고사항이 있을 경우 구체적으로 기재(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등 기재)																	

